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51221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8. 9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2022. 4. 12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,142,3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142,3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 유한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는 2019. 10. 14. F 주식회사(이하 ‘F’이라 한다)와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68932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위 법원은 2019. 10. 22. ‘G와 D은 연대하여, H은 33,6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에 7,553,605원과 그중 2,941,180원에 대하여 2019. 9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87,600원을 지급하라.’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, 위 지급명령 중 F에 대한 부분은 2020. 2. 1., D에 대한 부분은 2020. 3. 20. 각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2020. 12. 18.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, G와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7984호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의 소장 부분 송달로써 G와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한편, D의 모 망 I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는 2013. 11. 12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자녀들인 J, K, L, D, M, 피고, N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라.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과 충남 예산군 O 대 1048㎡, P 임야 2179㎡, Q 답 2086㎡이 있었는데, 망인의 자녀들은 2022. 4. 12.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고 한다)를 하였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22. 4. 27. 접수 제776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마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, 원고에 대한 8,457,715원의 채무와 금천세무서에 대한 100,0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22. 1. 1. 기준으로 176,000,000원, 2023. 1. 1. 기준으로 173,000,000원 상당이다.

바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. 6. 20. 접수 제10933호로 채권최고액 132,000,000원, 채무자 R, 근저당권자 S조합으로 한

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

사.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은 2024. 3. 20. 기준으로 9,142,325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제주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, T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의 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무자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채무자 D의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)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각 1/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9,142,3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,142,3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

D은 2011년경 U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3. 3.경 동생인

피고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, 망인이 2013. 11. 12.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줄 테니 도와달라고 하였다. 이에 형제로서 외면할 수 없었던 피고는 2013. 6.경부터 2022. 10.경까지 현금으로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 생활비 등을 도와주어 그 금액이 총 74,750,000원에 이르렀고, 가족들과 협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중 D 상속지분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D의 상속지분을 담보로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) 판단

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2013. 6.경부터 2022. 10.경까지 합계 74,750,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그 대가로서 D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,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 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은

별지